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채수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2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04일

발 의 자: 채수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중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남궁역,
문성호, 박상혁, 박성연,
박영한, 박춘선, 서상열,
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
심미경, 유만희, 유정인,
윤영희, 이상욱, 이종태,
이효원, 임만균, 장태용,
정지웅, 최민규, 한 신,
홍국표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폭력의 유형과 양상이 흉포해지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함. 특히 피해 학생은 자해를 시도하고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, 시민들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
- 따라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신설(안 제3조의2 신설)
- 나. 학교폭력의 예비·음모 등을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 (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학교폭력 신고의무)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직원
2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
4.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학교폭력의 예비·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

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·공무원·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
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
단체 · 공무원 · 개인 등에 대하
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
따라 표창할 수 있다.